국문배상책임보험

1. 선주 배상책임보험

가. 가입대상
여객선, 보트장내 보트, 유람선, 관광선, 도선 등

나. 담보위험
피보험자가 운항하는 선박에 탑승한 여객이 피보험자에게 책임있는 사고로 입은 신체장해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방지비용은 담보되지 아니하며, 손해방지비용중 구조비용에 한하여 특약으로 담보할 수 있다.

다. 선주 배상책임보험에 고유한 특별약관
① 구조비담보 특별약관
선주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방지비용을 담보하지 아니하나 이중 다만, 구조비만을 담보의 대상으로 하는 특약이 구조비담보특별약관이다.

② 관습상의 비용담보 특별약관
해난사고로 여객이 입은 신체장해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선주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선주는 관습상 피해자를 조문하거나 위로를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 바, 동특별약관은 선주의 이러한 비용을 담보한다.

③ 여객외 제3자담보 특별약관
선주 배상책임보험은 선박에 탑승중인 여객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바, 선주는 이러한 위험외에도 당해 선박이 타선박과 충돌함으로써 타선박에 탑승한 사람에 대한 신체장해손해를 입힐 수도 있는 바, 동약관은 여객이외의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④ 재물손해담보 특별약관
동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의 선박에 탑승한 여객의 휴대품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그러나 별도의 운임을 받고 운송하는 화물(적하보험의 인수대상)에 입힌 손해는 담보하지 아니한다.

2.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가. 가입대상
육상화물 운송업자

나. 담보위험
동보험은 육상화물운송업자가 화물을 운송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로 운송중인 화물이 피해를 입음으

로써 피보험자가 화주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를 보상한다.

다. 구간운송 특별약관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 보험가입차량에 관하여 1년을 담보하기 때문에 운송화물이 특정되지 아니하나, 구간운송 특별약관은 특정화물을 특정구간 운송하는 위험만을 담보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3.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과의 약관체계와 내용이 비슷하므로 여기서는 주요 차이점만 논하기로 한다.

가. 피보험자
가스사업자.용기등 제조업자.가스사용자를 말한다. 여기서,
- 「가스사업자」라 함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정한 고압가스특정제조, 고압가스 일반제조, 고압가스 판매를 허가받은 자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정한 액화 석유가스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 사업, 액화 석유 가스 판매사업을 허가 받은 자 및 도시가스 "사업법" 제2조의 2에 정한 도시가스 사업자
- 「용기등 제조업자」라 함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정한 용기제조, 냉동기 제조, 특정설비 제조를 허가받은 자와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정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허가받은 자
- 「가스사용자」라 함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정한 고압가스 저장을 허가받은 자와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정한 액화 석유가스 저장소 설치를 허가받은 자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정한 특정고압 가스사용신고자 또는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 칙" 제42조 제1항에 정한 액화 석유 가스사용자를 말한다.

나. 가스사고
가스사고라함은 가스로 인한 폭발, 파열, 화재 및 가스의 누출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망과 유독가스를 우연하게 일시에 흡입, 흡수, 섭취하여 발생한 중독증상을 포함)를 입히거나 재물을 멸실, 훼손, 오손케하는 것을 말한다.

다. 보상한도액
① 대인사고 사망 : 피해자 1인당 3,000원
② 대인사고 후유장해 : 급별, 보험료 한도액(1급~14급까지 1,000만원~40만원)
③ 대인사고 부상 급별보험료 한도액(1급~12급까지 800만원~40만원)
④ 부상자가 치료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위 사망 및 부상보험금을 함께 지급
⑤ 대물사고의 경우 : 1사고당 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지급
⑥ 손해방지비용등 비용손해는 매사고당 50만원 한도로 지급

라. 의무보험과의 관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등 기타 법률에 준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배상책임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만 가스사업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책임을 진다. 단 사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